[별지 제13의호4 서식(제11조 제2항)]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제안서
(인공지능(AI) 제품)

신청한 혁신제품명 기입

20 . .

회사명

< 신청양식 작성 요령 >

1. 신청양식 규격

o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hwp 사용)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o 용지여백 : 위쪽10,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5, 꼬리말15
  - 파일저장방법 : **혁신제품 제안_기업명_20○○신청.hwp**
o 신청양식 분량 : **전체 50페이지 내외**

2. 신청양식 작성요령

o 본문부터 1 page로 시작, 반드시 목차 및 page를 기재
o 세부 작성요령은 신청양식상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o 신청양식상 기존 구성내용은 빠짐없이 작성하되 필요시 항목 추가 가능
o 신청양식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o 성능이나 경제적·비경제적 개선 효과 등은 가능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시

3. 기타

o 본 신청양식은 항목별 작성요령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지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본 신청양식 상의 각 항목 작성에 사용된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이어야 함

o **신청양식 각 항목의 작성요령 등 표기된 내용은 신청양식 작성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신청양식 내용 기재·제출 시에는 포함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람**

1 신청자 현황

<table>
<tr><td rowspan="10">신청
기업</td><td rowspan="2">기 업 명</td><td colspan="2">(한글)</td><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2">(영문)</td><td>업종/업태</td><td></td></tr>
<tr><td rowspan="2">소 재 지</td><td>본 사</td><td colspan="3">※ 본사 소재지 및 주소</td></tr>
<tr><td>공 장</td><td colspan="3">※ 공장 또는 연구소 등</td></tr>
<tr><td>기업형태</td><td colspan="4">□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td></tr>
<tr><td>협업체 여부</td><td colspan="4">□ 해당없음 □ 협업체 구성(협업체명 :)</td></tr>
<tr><td>세부품명번호
(10자리)</td><td colspan="2"></td><td>물품식별번호</td><td></td></tr>
<tr><td>전 화</td><td colspan="2"></td><td>홈페이지</td><td></td></tr>
<tr><td rowspan="2">대 표 자</td><td colspan="2" rowspan="2"></td><td>생년월일</td><td></td></tr>
<tr><td>내외국인구분</td><td></td></tr>
<tr><td>휴대전화</td><td colspan="2">※ 본인명의 휴대전화</td><td>성 별</td><td>□남성 □여성</td></tr>
<tr><td rowspan="3">기술지원
전담조직</td><td>연구개발
조직</td><td colspan="4">□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기술개발 전담조직
□ 실험실 형태 조직 □ 외부기관 의뢰 · 활용</td></tr>
<tr><td rowspan="2">기술인력수</td><td>전문학사</td><td>학사</td><td>석사</td><td>박사(기술사)</td><td>기타</td><td>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사업영역</td><td colspan="6">※ 주력분야</td></tr>
<tr><td rowspan="2">매출규모</td><td>구분</td><td>전전연도(2년전)</td><td>작년 연도(1년전)</td><td>해당연도</td><td colspan="2">최근 3개(합)</td></tr>
<tr><td>매출액(백만원)</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사업
담당자</td><td>성 명</td><td colspan="2">※ 사업관련 진행 실무자
(온라인 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td><td rowspan="2">연락처</td><td>유선</td><td></td></tr>
<tr><td>부 서</td><td colspan="2"></td><td>핸드폰</td><td></td></tr>
<tr><td>직 책</td><td colspan="2"></td><td colspan="2">E-mail</td><td>※공식응답 이메일</td></tr>
</table>

2	**제품정보**(※10페이지 이내 작성 권장, ‘4 혁신성’ 핵심내용 요약)

[1] 제품요약

<table>
<tr><td>신청분야</td><td>온라인 신청분야와 동일하게 신청분야 기재</td></tr>
<tr><td>제품명</td><td></td></tr>
<tr><td>유형</td><td>☐ 제품 ☐ 제품+서비스</td></tr>
<tr><td>적용기술</td><td>※ 붙임파일 산업기술분류 또는 서비스 분류 참고</td></tr>
<tr><td>핵심기술 여부</td><td>
<table>
<tr><td>특허등록번호</td><td>특허명</td><td>특허권 존속기간
(전용실시권
사용기간)</td><td>핵심기술</td><td>우수, 혁신,
MAS 등
적용 여부</td></tr>
<tr><td></td><td></td><td>‘00.00.00~
’ 00.00.00
(‘00.00.00~
’ 00.00.00)</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특허권이 여러 개일 경우 핵심기술을 체크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MAS(다수공급자계약) 등에 既적용된 기술 여부 체크</td></tr>
<tr><td>품목
이미지</td><td>
<table>
<tr><td>※사진 또는 이미지</td><td>※사진 또는 이미지</td></tr>
</table></td></tr>
<tr><td>제품특징</td><td>※혁신적 기술, 탁월한 성능 등 제품의 특징을 100자 내로 간략하게 작성</td></tr>
<tr><td>활용분야
(주요용도)</td><td>※50자 내로 간략하게 작성</td></tr>
<tr><td>예상
수요기관</td><td>※적용 가능한 공공기관 포함하여 기관과 관련부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td></tr>
<tr><td>제안품목
매출액</td><td>
<table>
<tr><td>구분</td><td>전전 연도(2년전)</td><td>작년 연도(1년전)</td><td>해당 연도</td><td>최근 3개(합)</td></tr>
<tr><td>매출액(백만원)</td><td></td><td></td><td></td><td></td></tr>
</table>
※특기사항 작성(제안 제품에 대한 매출액)</td></tr>
<tr><td>제안제품
적용
지식재산권
현황</td><td>☐특허( )건 ☐실용신안( )건

※ ① 신청 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 기재</td></tr>
</table>

	② **제안서 4-5. 적용기술에 적용된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만 기재** ③ **반드시 제안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만 기재**하여야 하며, 2차 서류제출시 신청시 제출한 **모든** 특허(실용신안)에 대해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정부R&D 지원여부	※ 해당품목이 정부 R&D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작성 R&D지원사업명/지원부처/완료여부/지원기간/평가결과
기술완성도 (TRL)	☐ 시제품 개발완료 ☐ 시연 및 검증 완료 ☐ 양산화 준비가 완료
유사기술 현황	☐ 국내 및 국외 없음 ☐ 국외존재 ☐ 국내존재 ☐ 파악한적 없음

[2] 주요 기능과 성능

<table>
<tr><td>일반적
용도 및 기능</td><td colspan="2">※ 제안된 혁신 시제품(서비스)의 기능을 간략하게 기술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td></tr>
<tr><td>제품 사진</td><td>※사진 또는 이미지</td><td>※사진 또는 이미지</td></tr>
<tr><td>일반제품 대비
탁월한 성능 등
특징</td><td colspan="2">※ 주요 특징과 용도를 설명 하되 기존의 유사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 차이점 또는 그에 대비되는 탁월한 성능을 기재</td></tr>
<tr><td>성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td><td colspan="2">※ 공인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등 탁월한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작성</td></tr>
</table>

[3] 기술 혁신성

<table>
<tr><td>적용
기술분류</td><td>
<table>
<tr><td></td><td>※기술(서비스)명</td><td>기술2</td><td>※기술(서비스)명</td><td>기술3</td><td>※기술(서비스)명</td></tr>
<tr><td>대분류</td><td></td><td>대분류</td><td></td><td>대분류</td><td></td></tr>
<tr><td>중분류</td><td></td><td>중분류</td><td></td><td>중분류</td><td></td></tr>
<tr><td>소분류</td><td></td><td>소분류</td><td></td><td>소분류</td><td></td></tr>
</table>
*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별표 3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가능</td></tr>
<tr><td>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td><td>※ 공공서비스 개선, 사회적 문제 해결, 환경 개선 등 기술개발을 하게 된 동기 또는 필요성을 기재하고, 그에 대응하는 적용 기술의 내용을 기재</td></tr>
<tr><td>관련특허</td><td>※ 특허 등록번호 등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특허(발명)의 내용을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연관하여 기재</td></tr>
<tr><td>기술의
신규성·탁월성</td><td>※ 기 존재하는 기술과 대비하여 신규성, 창의성, 독창성, 차별성 등을 기재하거나, 기 존재하는 제품과 대비하여 월등한 개선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td></tr>
<tr><td>기술 탁월성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td><td>※ 시험성적서, 언론보도, 만족도조사 등 탁월한 기술이나 월등한 개선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시</td></tr>
</table>

[4] 시장성

시장규모	※ 해당 또는 관련 사업의 조사하여 시장규모를 기재하고, 목표 시장규모나 수요처, 해외진출 측면에서 수출경쟁력 기재
파급성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을 수요자가 사용하였을 경우에 얻는 금전적·비금전적 편익과 산업이나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함께 기재

3 공공성

[1] 수요기관 요구사항 부합 여부

수요기관 과제 부합여부	- 해당 제품서비스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 제안된 제품 또는 기술이 신청한 과제에 적합하여 최종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상세 기재

[2]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 공공업무 혁신,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 등 공공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 여부 - 환경 보호 · 신산업 육성 · 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지의 여부 - 국민의 삶의 질 또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신청 제품이나 기술이 공공문제 해결, 환경 보호 · 신산업 육성 · 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대국민 편익 · 서비스 개선 등의 기여도나 공헌도를 상세하게 기술

[3] 개발완성수준(TRL)

개발완성수준 (TRL)	기술완성수준(TRL 7~9) 판단 - (TRL7) 적절한 운영환경에서 시연을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완료 - (TRL8)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시연과 사용을 통해 검증이 완료 - (TRL9) 성능검증이 완료되고 양산을 위한 준비가 완료 ※ 위 7~9단계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명시하고 제안된 혁신 시제품(서비스)의 최종 구현된 상태를 설명(제품형상, 서비스 구성도 등). 다음의 기술완성 단계 별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구분	내용
TRL7	▪ 적절한 운영환경에서 시연이 가능한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음을 입증 ▪ 사용 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임을 입증
TRL8	▪ 기업 내 시연과 사용을 통해 검증된 제품임을 입증 ▪ 자체 시연결과를 통해 성능이 입증되며, 실제 적용환경에서의 요구사항 충족이 가능함을 입증
TRL9	▪ 실제 현장 적용을 통한 시험 및 사용 결과가 완벽히 입증 ▪ 시장출시 이전이나, 제품 생산 등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 ▪ 이 경우 시장출시를 위한 기술적 보완 요소를 서술

[4] 신뢰성

신뢰성	ㅇ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여부 - 데이터 수집, 저장,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ㅇ 시스템의 안정성 여부 - 현장 적용 시 안전 여부, 서비스의 중단 없는 운영 능력, 예측 불가능한 오류나 장애 발생 시의 대응 체계, 부하 분산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운영적 능력 여부 ※ 위에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여부, 시스템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가)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안전성 요소에 대하여 기재 - 해당 제품의 시장에서 요구되는 법정 의무인증, 시험성적서 취득 여부 등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제시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5] 규제

규제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 해소를 충족했거나, 규제 해소 방안을 적절히 제시했는지 여부 ※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확인 및 현장 적용시 예상되는 규제적 요소 발생 및 극복방안 설명 ※ 본 사업의 대상은 수요기관 사용 진행시 해당 제품(서비스)에 요구되는 관련 법정 규제 요소가 없어 현장에 즉시 도입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며, 첨단 기술적용으로 인한 규제적 장애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 ※ 인증이 당장 없는 경우, 지정 이전까지 취득 가능성에 대해서도 서술 가능 (ex.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4 혁신성

[1] 혁신적합성(40점)

1 제품의 신규성(20점)		
신규성 평가항목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소명 Ⓐ 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임(20) Ⓑ 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16) 만들어진 제품·서비스임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있으나 새로운 제품은 아님(8)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없음(4)
① 현행 방식과 차별적 요소		※ 기존 유사 방식과 차별되는 기술적, 적용적 특징과 그 근거를 제시 - 유사 제품이 있을 경우 비교를 중심으로 제안된 제품이나 기술의 차별적인 비교우위를 자세히 설명
② 차별적 효과	제품(서비스) 관점의 효과	※ 제안된 혁신을 적용하는 경우 제품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서술 - 해당 기술이나 제품으로 발생하는 기존 유사 기능 대비 차별적 개선 효과 (ex. 에너지 효율증대, 원재료 감축 등 제품 자체로 인한 효과)
	수요자 관점의 효과	※ 제안된 혁신을 적용하는 경우 수요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서술 (ex. 소요시간 단축, 공간절약, 비용절약 등 수요측면에서의 편의성, 사용성 유용성 증대)

2 제품의 탁월성(20점)	
탁월성 평가항목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에 비해 월등한 혁신기술이

<table>
<tr><td></td><td>적용되었거나 또는 월등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20)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했으나 핵심기술이 개량되어 차이를 보이거나 또는 상당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16)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술이거나 또는 개선 효과가 기존 제품 대비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8)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기술이거나 또는 개선 효과가 기존 제품 대비 거의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4)</td></tr>
<tr><td>①
기술적 진보
(적용기술의 우월적 요소)</td><td>※ 제안된 혁신이 기존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기존에 없던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있어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
※ 앞의 1-①의 현행 방식과의 차별화는 혁신기술 또는 제품이 활용되는 관점에서의 차별화 요소이며, 본 영역에서는 적용되는 기술에 있어, 즉 제품보다는 제품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에 초점을 맞춰 기술)
(ex.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수준과 제안하는 혁신시제품(서비스)의 기술수준 차이)</td></tr>
<tr><td>②
기술적 차별화
(기존기술 또는 대체기술 대비 경쟁우위 창출방법)</td><td>※ 제안된 혁신이 기존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기존에 없던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있어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
- 유사기능 제품 또는 경쟁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경쟁우위 확보 방안을 서술</td></tr>
<tr><td>③
적용기술</td><td>
<table>
<tr><td colspan="4">□ 핵심기술 □ 부가기능
※ ① 적용기술이 핵심기술 또는 부가기능인지 반드시 체크
② 제안 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모두 각각 기재</td></tr>
<tr><td>제품명</td><td></td><td>회사명</td><td></td></tr>
<tr><td>등록번호</td><td></td><td>등록일</td><td></td></tr>
<tr><td rowspan="2">권리자</td><td>특허권자 :</td><td rowspan="2">존속기간</td><td>특허권 존속기간 :</td></tr>
<tr><td>전용실시권자 : 해당시</td><td>전용실시권 사용기간 : 해당시</td></tr>
<tr><td colspan="4">발명·고안의 내용(간단명료하게 작성)</td></tr>
<tr><td colspan="4"></td></tr>
</table>
</td></tr>
</table>

※작성방법
- 모든 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할 필요는 없고, 어느 하나의 독립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
- 독립청구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을 의미(예: 청구항 1)
- 좌측(청구항의 구성요소)에는 독립청구항에 나타난 기술요소를 기재하고, 우측(신청제품의 구성요소)에는 그와 대비되는 신청제품의 구성요소를 기재(필요시 도면, 사진 활용)

구분	청구항 1	신청제품	대비결과
구성1			
구성2			
구성3			
구성4			

[2] 인공지능(AI) 모델의 적합성(40점)

1 데이터의 적절성 및 활용성(15점)	
평가항목	▪ (적절성)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총량, 품질 및 편향성 등 평가 ▪ (활용성)데이터가 AI 모델의 목적과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여부 Ⓐ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매우 적절하고, AI 모델의 목적과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15점) Ⓑ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매우 적절하고, AI 모델의 목적과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12점) Ⓒ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적절하지만, AI 모델의 목적과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8점) Ⓓ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적절성이 높지 않고, AI 모델의 목적과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4점)
① 데이터의 적절성	※ AI 모델이 적절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제시 -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규모와 데이터 품질의 적절성 및 데이터 편향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근거 및 증빙
② 데이터의 활용성	※ 데이터가 AI 모델의 목적과 문제 해결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제시 - (ex. 해결하려는 문제와 데이터의 연관성, 데이터가 실제 환경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 데이터 특성의 유효성 및 예측력 등)
2 성능 우수성(15점)	

평가항목	▪ AI 모델의 성능 지표 평가 예)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지연시간, 처리량, 오류율, 포화도 등 Ⓐ AI 모델의 성능이 기존 기술 대비 월등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15점) Ⓑ AI 모델의 성능이 기존 기술 대비 뛰어난 개선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12점) Ⓒ AI 모델의 성능이 기존 기술 대비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8점) Ⓓ AI 모델의 성능이 기존 기술 대비 거의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4점)
AI 모델 성능 지표	※ AI 모델 성능의 우수성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제시 - (ex.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처리량, 오류율, 포화도 등의 정량적 성능 수치와 증빙 가능한 데이터 등)

3 기술 기여도 및 독창성(10점)	
평가항목	▪ 전체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AI 기술이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과 기술의 독창성 평가 Ⓐ 전체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AI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 기술 대비 월등한 독창성을 보유하고 있음(10점) Ⓑ 전체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AI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 기술 대비 뛰어난 독창성을 보유하고 있음(8점) Ⓒ 전체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AI 기술이 일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나, 기존 기술 대비 독창성이 높지는 않음(4점) Ⓓ 전체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AI 기술의 역할이 제한적(보조적)이며, 기존 기술 대비 독창성이 거의 없음(2점)
① 기술 기여도	※ 신청제품의 핵심 기능 구현에 AI 기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제시 - 아래의 신청제품의 AI 기술 기여도 구분을 참고하여, 신청제품에 구현된 AI 기술의 필요성, 역할 및 기여도 등과 근거 제시

구분	내용
필수	▪ AI 기술이 없으면 제품의 핵심 기능의 구현 불가한 경우
보완	▪ AI기술을 통해 효율성, 편리성 등이 향상되는 경우(AI기술이 없어도 작동)
부가	▪ 독립적인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AI기술이 없어도 제품 성능이나 주요 기능에 영향은 없음)

② 기술의 독창성	※ 기존 유사 분야 AI 기술과는 다른 기술의 차별성 또는 독창성과 그 근거를 제시 - 유사 분야 AI 기술이 있을 경우, 비교를 중심으로 제안 제품 AI 기술의 차별적인 비교우위를 자세히 설명

[3] 시장성(20점)

1 시장규모(10점)

시장규모 평가항목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 및 해외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해당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음(10점) Ⓑ 해당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음(8점) Ⓒ 해당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 시장 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보통임(4점) Ⓓ 해당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음(2점)

① 목표 시장 예측

예상 목표 시장 및 고객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가 해당되거나, 활용 분야에 유관한 산업 또는 시장 동향을 통해 전반적인 시장규모를 제시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 출시 후 예상되는 목표 시장과 규모, 주 고객(기관)을 제시 하고 근거를 설명

※ 기술·서비스 관점에서 해외경쟁력이나 수출가능성 기술

예상 수익 전망

※ 예상되는 매출과 수익 예측결과를 작성하고 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

해당년도	예상 매출(원)	수익예측
20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20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20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20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20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② 가격 및 비용

시장 출시후 예상가격

※ 제안된 제품 또는 기술이 상용화가 되어 시장에 출시될 때 예상되는 취득비용(제품단가)를 아래 항목을 활용하여 작성

항목	비용	비고
제품		
서비스(설치비 제외)		
교육·훈련		
설치비		
기타 비용		
총액		

	취득 비용외 비용	※ 혁신시제품(서비스)의 취득 비용 외 이를 운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시하고 설명(연간 유지비용으로 제시) (ex.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예상 운용인력, 전력량 등을 통한 운영 비용)
2 파급성(10점)		
파급성 평가항목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10점)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은 낮음(8점)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지만,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4점)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도 낮음(2점)
① 경제 편익	수요자 경제적 혜택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를 수요자가 도입·활용 할 경우 발생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추정하고 근거를 설명 (ex. 기존 비용의 절감, 생산성 향상, 인력의 대체 등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
	수요자 비재무적 혜택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를 수요자가 도입·활용 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이외에 비재무적 가치(무형적 가치 등)를 추정하고 근거를 설명 (ex. 사회적, 환경적 가치, 위험감소 등)
② 산업 파급 효과	관련산업 및 국가경제 파급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가 공공영역에서 도입되는 경우 관련 산업 및 국가경제에 파급되는 긍정적 기대효과(자유롭게 기술) (ex. 관련된 서비스 산업의 동반상승,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문제해결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가 공공영역에서 도입되는 경우 해결될 수 있는 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을 자유롭게 기술 (ex. 국민 안전 기반 확보, 삶의 질 향상 등)